

심사기준조회

개최일/시행일	2019- 12- 31	일련번호	02- 02	관련근거	
구분	심사지침	심사지침개최일			
제목	위암에 시행하는 F- 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(F- 18 FDG- PET)의 적용기준				

결정사항/복지부 행정해석 내용

1.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또는 선행검사에 따른 수술 전 병기판정 없이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.

2. 선행검사*를 통한 위암 진단 후 수술 전 병기설정에 따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.
 - 다 음 -
 - 가. 국소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거나 확인(N1)되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.
 - 나. 국소 림프절 전이 없이 (T2N0/T3N0/T4N0) 시행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.
 - 다. 원격전이가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.
 - 라. 원격전이가 확인(M1)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하나 다만, 절제가 가능한 간전이(Resectable Liver Metastasis)가 확인되어 시행한 경우는 인정함.

3. 치료 중 효과판정
 - 가. 선행검사(CT, MRI)에서 새로운 병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여 시행한 경우 인정함.
 - 나. 임상적 사유로 CT 혹은 MRI 촬영이 불가능하여 시행한 경우 인정함.
 - 다. 다발성 골전이를 동반한 환자에서 고식적 화학요법 치료(palliative chemotherapy) 중 반응평가로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.

4. 병기 재설정
 - 가.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을 위해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.
 - 나.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, 증후, 검사결과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(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).

5. 방사선치료 계획 시
 - 가. 수술 또는 항암치료 완료 후 방사선치료 계획을 위해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.

- * 선행검사: 상부내시경, Endoscopy, CT(Abdominal± Chest).
 병기설정: 병기분류(stage)는 The 8th Edition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(AJCC) Staging(I~ IV) 적용.
 - TNM: Primary Tumor(원발 종양), Regional Lymph Node(국소 림프절), Distant Metastasis(원격전이).
 완치여부 판정: 치료 완료 즉, 수술 또는 보조치료요법 종결 시점을 말함.



☞ 신설사유: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 175호(2019.8.1. 시행)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」에 따른 일제정비 및 심사기준 명확화

◆ 시행일: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

첨부파일 목록

첨부파일 없음

